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00
----------	--------

제출년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74조, 제75조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추가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74조, 제7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2. 10. 11. ~ 2012. 10. 31.(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권고의견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분석과-3541호, 2012.9.21.)에서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3)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이상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5)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1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 10. (생 략)</p> <p>< 신 설 ></p>	<p>제6조(기금의 용도)</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u></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 ~ ⑥ (생 략)</p> <p>< 신 설 ></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⑧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